

직원의 결격사유(공사 인사규정 제16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
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
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(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.)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(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.)